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 604 호
----------	---------

제출년월일 : 1999. 12. 12 .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성격이 유사하고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심의 의결 및 군수의 자문(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3조)
- 다) 직무수행의 원활을 위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안 제8조)

3. 참고사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4. 입법예고 : 불필요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